##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37

발의연월일: 2020. 8. 13.

발 의 자:윤영덕・김경만・강민정

이용우・송갑석・기동민

조오섭 • 이병훈 • 이용빈

진선미 • 인재근 • 이형석

위성곤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에게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 거나 행정소송의 제기도 없이 소청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청심사결정의 이행이 담보되지 못하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단 이 미비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 선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청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도록하며, 처분권자가 소청심사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제21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소청심사 결정)"을 "(소청심사 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9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처분권자는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 (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

제10조의2를 제10조의5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

지되지 아니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3(구제명령)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처분권자가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처분권자가 구제조치를 하도록 명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4(이행강제금)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처분권자가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이하 이 조에서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처분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벌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 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위원회가 내리는 결정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소청심사 결정) ①・②	제10조 <u>(소청심사 결정 등)</u>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처분권자는 30일 이내에 제
	1항에 따른 결정의 취지에 따
	라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
	다)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u>4</u>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	
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	
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u>30일</u>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u>&lt;신 설&gt;</u>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
<u>④</u> (생 략)	<u>⑥</u> (현행 제4항과 같음)
<u>&lt;신 설&gt;</u>	제10조의2(결정의 효력) 심사위원
	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제10조의3(결정의 효력) 심사위원제10조의3(구제명령) 교육부장관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br/>한다.또는 교육감은 처분권자가 상<br/>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구

<신 설>

고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10조의3(구제명령)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처분권자가 상
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구
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
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처
분권자가 구제조치를 하도록
명한다.

- 제10조의4(이행강제금) ①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처분권자 가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 (이하 이 조에서 "구제명령"이 라 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 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 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 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 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 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 하여 부과 · 징수하지 못한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소청심 사 결정에 따라 처분을 이행하 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 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 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 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회피) (현행 제10조의2와 같음)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 제1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 회피) (생략)

<u>&lt;신 설&gt;</u>	제21조(벌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
	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심사위
	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제21조</u> (과태료) (생 략)	<u>제22조</u> (과태료) (현행 제21조와
	같음)